

# 준 항 고 장



준 항 고 인 1. 법무법인 율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34, 6층(신정빌딩)

대표자 송정섭

2. 법무법인 향법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14, 6층(일광빌딩)

대표자 심재환

전화 02-582-0606

팩스 02-596-8004

피 준 항 고 인 국가정보원장

## 신 청 취 지

피준항고인이 2016. 5. 27. 준항고인들에 대하여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  
구금된 별지 목록 기재 탈북자들에 대한 접견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한다.

## 신 청 원 인

## 1. 준항고인들의 2016. 5. 27. 자 접견신청

준항고인 1.의 담당변호사 양승봉과 준항고인 2.의 담당변호사 오민애는 2016. 5. 27.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관등성명을 밝히기를 거부한 성명 불상의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중국 저장성 낭보시 북한식당에서 근무하다 집단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별지 목록 기재 12명에 대한 접견을 신청하였습니다.(소갑 제1호증 접견신청서)

## 2. 피준항고인의 접견거부 및 형사소송법 제403조 준항고 대상적격

국가정보원 직원은 준항고인들의 위 접견신청을 접수한 이후 사흘 이 지난 2016. 5. 30.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어떠한 답변을 하지 않았는바(소갑 제2호증), 접견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으로 접견불허가처분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입니다.(대법원 1991.03.28. 자 91모24 결정 등)

따라서 위 접견불허는 아래와 같이 특별사법경찰관의 구금에 대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이를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가정보원 직원은 특별사법경찰관에 해당합니다.

국가정보원법 제16조에 따라 국가정보원 직원은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에 대하여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위에 있습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이라 합니다) 제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은 탈북자에 대한 일시적인 신변안전 조치와 보호 여부 결정을 위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보호여부 결정을 위하여서는 위장탈출 혐의자, 즉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에 잠입한 간첩(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9조 제1항 제3호)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에 잠입한 간첩은 곧 국가보안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므로, 필연적으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조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의 성격 또한 가지게 됩니다.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옛 명칭이 중앙합동<신문>센터였다는 점도 행정조사와 범죄수사의 성격이 병존한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따른 보호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은 특별사법경찰판에 해당됩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12명은 현재 구금된 상태입니다.

구금이라 함은 대상자를 일정한 장소에 실력을 행사하여 인치·억류하고 감금하는 것이므로, 대상자의 자의에 의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이것이 형사소송법의 체포와 구속에 대한 제 절차에 따른 것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형사소송법 제403조의 구금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별지 목록 기재 12명은 현재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외부를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하고 있으며, 가족은 물론 어떠한 외부와도 전화, 서신 등의 연락을 주고받지 못하고 있는 바, 현재 이들이 구금상태라는 점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소감 제3호증 신문기사 모음)

## 다. 소결

이와 같이 피준항고인의 2016. 5. 24. 준항고인들에 대한 접견거부 처분은 형사소송법 제403조 준항고의 대상입니다.

### 3. 구금 및 접견거부의 위법성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는 보호신청자의 신병을 구금할 근거 규정이 없고, 행정조사라 하더라도 행정조사기본법상 조사대상자의 신병을 구금할 규정도 없습니다. 결국 형사소송법에 따른 체포 및 구속영장에 의한 구금이 아닌 이상 이 사건 12명의 북한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구금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은 이들을 불법으로 구금하였고, 당사자인 이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주지 않은 채 변호사들의 접견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천명하고 있는 바, 위 헌법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구속은 합법적인 것이든 불법적인 것이든 구별하지 않고 변호인의 조력권을 인정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법률상 근거도 없고 영장도 발부된 바 없이 북한이탈주민센터에 약 50일간 구금된 12인의 북한식당 종업원들에게는 헌법 제12조 제4항에 따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변호인들에게는 이를 조력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견신청을 거부한 피준항고인의 행위는 위법합니다.

가사 백 보 양보하여 북한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구금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구금된 이상 당연히 헌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구금의 적법성이 변호인 접견거부처분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 4. 결어

이상의 이유로 준항고를 신청하오니 부디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 증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접견신청서
1. 소갑 제2호증 접수증

##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1통

2016. 5. 30.

위 준항고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양승봉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오민애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접견신청서

피조사자 리은경, 한행복, 리선미, 리지혜(리지예), 리준(리봄), 금혜성  
(김혜성), 류송영, 전옥향, 지정화, 박옥성(박옥별), 금설경(김설경), 서경아  
에 대한 접견을 신청합니다.

피조사자: 리은경 외11명

접견일시: 2016. 5. 27. 10:00

접견장소: 국가정보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소 /  
접  
제  
호  
증

2016. 5. 27.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양승봉 ⑨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오민애 ⑩

국가정보원장 귀중

접수증

제 16-서- 6호

접수일: 2016. 05. 27

① 민원명	접견신청서(북한이탈주민)
② 민원인(대표자 또는 대리인)	양승봉
③ 처리예정기한	접수일로부터 30日限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장 가능
④ 처리주무부서	국가정보원 민원담당
⑤ 안내사항	민원처리 관련 문의시 111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접수자 : 민원담당관 (서명 또는 약) 

국가정보원 민원담당

소감 제 2 호 증